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뇌 연구 촉진법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·연구기관 또는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「뇌연구 촉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대학, 연구기관,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또는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5. 10. ~ 5. 25.)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교육훈련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대학
 2. 연구기관
 3.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
 4.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교육훈련 업무의 위탁) ①</u>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</u> <u>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</u> <u>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1. 대학</u> <u>2. 연구기관</u> <u>3.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</u> <u>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</u> <u>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</u> <u>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</u> <u>4.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</u> <u>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</u> <u>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</u> <u>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</u> <u>수행하는 법인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</u> <u>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</u> <u>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</u> <u>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561